

보건복지부	보	도 참	고	자 료
배 포 일		2020. 11. 27	7. / (총 22	2 매)
중앙사고수습본부	팀 장	박 은 정		044-202-1711
전략기획팀	담 당 자	한 연 수		044-202-1714
국무조정실	과 장	김 성 훈		044-200-2293
보건정책과	담 당 자	박 현 수		044-200-2295
서울특별시	과 장	송 은 철		02-2113-7660
감염병관리과	담 당 자	유 효 연		02-2133-7669
경기도	과 장	윤 덕 희		031-8008-5420
감염병관리과	담 당 자	최 문 갑		031-8008-5422
제주특별자치도	과 장	정 인 보		064-710-2910
방역정책기획단	담 당 자	박 세 홍		064-710-4971
국방부	과 장	김 근 희		02-748-6780
코로나19긴급대응과	담 당 자	강 호 정	전 화	02-748-6781
중앙방역대책본부	팀 장	이 연 경		043-719-9312
지침팀	담 당 자	김 현 미		043-719-9314
중앙사고수습본부	팀 장	오 창 현		044-202-1780
환자시설팀	담 당 자	이 정 우		044-202-1786
중앙사고수습본부	과 장	김 충 환		02-202-3210
취약시설지원팀	담 당 자	유 운 용		02-202-3258
	팀 장	신 현 두		044-202-1890
중앙사고수습본부	담 당 자	류 재 현		044-202-1885
보상지원팀		민 유 정		044-202-1888
		임 한 숙		044-202-1881

# 코로LHI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 군 코로나19 발생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복지시설 방역·안전 종합점검 계획, ▲11월 손실보상 지급 계획 등 -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 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 군 코로나19 발생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정부가 주관하는 시험**에서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응시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몇 년씩 준비한 시험을 볼 기회는 최대한 공정하게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이에 따라, 중수본에게 인사처, 교육부, 법무부 등 시험을 주관 하는 부처와 협의하여 통일된 응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 □ 정 본부장은 최근 전국에서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에어로빅·댄스 학원, 사우나, 카페, 노래방 등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각 지자체에게 확진자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대규모 감염이 발생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하고 **방역조치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다.
- □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계속해서 방역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전시회, 공연장, 골프장, 숙박 등 사전예약이 관행화된 곳에서 예약 취소시 위약금 분쟁, 페널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문체부 등 각 부처에게 소관 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위약금, 불이익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관련 협회·단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필요 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1 │ 이동량 분석 결과

-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 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최근 한 주간(11월 19일~11월 25일) 일일 평균 이동량은 수도권 17,173천 건, 비수도권 15,347천 건, 전국은 32,520천 건이다.
  -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 직전 주간(11월 12일~11월 18일)과 비교하면 **수도권은 7.4%**(1,376천 건), **전국은 7.2%**(2,541천 건) **감소**하였다.
  - \* 수도권 일일평균: (11.12.~11.18.) 18,549천 건 → (11.19.~11.25.) 17,173천 건 전 국 일일평균: (11.12.~11.18.) 35.061천 건 → (11.19.~11.25.) 32,520천 건

### < 일일 휴대폰 이동량 >













평생친구

- 한편, 수도권 거리 두기 **2단계 발표 이후 이동량**을 분석한 결과, 2일(11월 23일 ~ 11월 24일) 동안의 **수도권** 일일 평균 이동량은 **17,217천 건**으로 **직전 주 2일**(11월 16일 ~ 11월 17일) 평균에 비해 **6%(1,094천 건) 감소**하였다.
  - \* 수도권 일일평균 : (11.16.~11.17.) 18,311천 건 → (11.19.~11.25.) 17,217천 건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거리 두기 동참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거리 두기 노력의 **효과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그때까지 **지금의 노력을 유지**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2 생활치료센터 확충 현황

-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코로나19 환자 증가에 따라, 무증상·경증환자의 치료를 위해 생활치료센터를 확충하고 있다.
- 정부와 지자체는 **13개소의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11월 26일 기준 3,014명 정원에 1,623명이 입실(가동률 53.8%)중으로, **1.391명이 입실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상황이다.
- **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일부 환자를 권역별 생활치료센터에 분산하여 치료하는 한편 시설을 계속 확충하고 있다.
  - 경기도는 어제(11.26.)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235명 규모의 센터 1개소**(용인 한화생명 라이프파크)**를 추가로 확충**하였다.
- 서울시도 오늘(11.27.) **106명 규모의 센터**(성남 국립국제교육원)를 **추가로 개소**할 예정이다.







- 정부는 수도권 지역의 화자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 등을 중심으로 생활치료센터 확대를 위해 지자체와 계속 협의 중이다.
-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권역별 생활치료센터 개소를 우선 추진 하고 있다.
  - 먼저 호남권은 84명 규모의 생활치료센터(나주 한전KPS인재개발원)를 지난 11월 25일 개소하였다.
  - 경남권은 11월 30일(월) 권역별 생활치료센터 개소를 목표로 준비 하고 있으며, 경북권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 3 군 코로나19 발생현황 및 조치사항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국방부**(장관 서욱)로부터 '군 코로나 19 발생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국방부는 집단생활하는 군부대의 특성상 집단감염의 위험이 커, 지난 11월 17일부터 수도권과 강원도 지역의 군내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는 등 부대 내 감염 발생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의 재유행에 따라 군부대 내 코로나19 환자 발생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다수가 부대 내 2~3차 감염으로 발생하였다.
- □ 이에 따라 11월 26일부터 군내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는 등 코로나19 환자 발생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시행한다.











- 부대 관리를 보다 강화하여 11월 27일(금)부터 장병 휴가를 잠정 중지하고, 외출 또한 통제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침상형 생활관에 머무는 장병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 **간부도 일과 후 숙소에 대기**하도록 하고, 회식 및 사적 모임은 연기나 취소하도록 하였다.
- 행사나 출장, 대면회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훈련도 가능한 외부인과 접촉하지 않도록 진행한다.
- 이와 함께 군 내에서의 감염 확산에 대비하여 1인 격리시설을 추가로 확보하고 생활치료센터도 마련할 예정이다.

# 제주특별자치도 겨울철 대유행 특별방역 대책

- ☐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 이하 '제주도')는 코로나19의 겨울철 대유행을 대비하여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한다.
- □ 제주도는 지난 9월 23일부터 42일간 신규확진자가 없었으나, 11월 **이후 14건**(11.26. 18시 기준)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하였다.
- 특히 11월 입도 내국인 관광객은 99만여 명으로 지난해 수준을 회복하였고 최근 단체 연수 관광객으로 인한 확진자 발생 등으로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태이다.
- □ 이에 따라 제주도는 11월 24일부터 다음과 같이 제주형 특별방역 대책을 실시한다.











평 생 친 구

- 우선, **입도객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를 발동하여 11월 24일(화)부터 12월 31일(목)까지 제주 공·항만을 통해 들어온 입도객에 대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 특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의심증상이 있었음에도 검사를 받지 않고 여행을 강행하는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며 현재 3건이 진행 중이다.
- 입도객을 대상으로 **방역 관리도 강화**한다.
  - 제주공항·만 입도객 중 37.5℃ 이상의 발열이 있는 사람은 제주 공항 선별진료소에서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도내에 마련된 자가 또는 숙소에서 의무 격리해야 한다.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 또한, 단순 발열, 기침, 호흡곤란, 두통, 인후통 등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제주공항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하도록 대상을 확대하였다.
- 한편, 도내 6개 보건소와 7개 선별진료소를 통해 도내체류 중인 **도민과 관광객에 대한 진단검사를 적극 지원**하여 연쇄 감염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평생친구

# 5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11월 23일(월)부터 12월 31일(목)까지 수능, 성탄절, 연말연시 모임 등으로 젊은 층이 몰릴 가능성이 높은 **번화가** 유흥시설 및 대학가 주변 음식점 등을 집중 점검한다.
  - 주요 이용시간을 고려하여 음식점, 제과점 등 주간 영업 업소는 18시부터 22시까지, 주점 등 야간업소는 22시 이후 점검한다. 시설별 핵심방역수칙 및 거리 두기 2단계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위반 시에는 즉시퇴출제(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한다.
  - 한편, 배달,경비,택배등 대면접촉 노동자와 콜센터 직원 등 밀폐된 환경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344만 장 (11만명)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여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할 계획이다.
- 경기도는 어제(11.26.) 생활치료센터 1개소를 개소하여 **총 3개소의**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현재 총 수용 규모 771명 중 472명이 사용하고 있어 가동률은
     64.7%이며, 코로나19 환자 증가에 대비하여 추가 개소를 진행하고 있다.
  - 한편, 의료기관 등을 통한 감염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내 의료기관과 약국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 6| 난방기 등 사용에 따른 환기 지침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로부터 '**난방기 등 사용에 따른 환기 지침**'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실내활동이 증가** 하는 반면, 실내공기의 **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 또한, 난방기 사용에 따라 실내공기가 재순환되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멀리 확산될 우려가 있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환기 수칙을 마련하였다.
- 먼저 난방기 등 사용 전·후에는 난방기 내부와 실내 공간의 오염 물질 제거를 위해 창문을 개방하고, 최대 풍량(송풍 이용)으로 30분 이상 난방기를 가동한다.
- 난방기, 공기청정기 등을 사용할 때에도 **자주 창문을 개방**하여 자연 환기를 실시한다.
  - 가정에서는 1일 3회 이상(1회당 10분 이상) 실시하고, 학교에서도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겨울철 3분 이상)을 활용하여 환기한다.
  -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기계 환기설비가 없는 시설은 2시간마다 자연 환기하고, 기계 환기 시설은 자연 환기와 병행 실시한다.
- 이와 함께 난방기, 공기청정기 등의 필터 관리도 철저히 하고, 필터 교체 시에는 마스크 착용 등 개인보호 조치와 함께 위생 수칙을 준수한다.











평생친구

## 7 시회복지시설 방역·안전 종합점검 계획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사회복지시설 방역·안전 중합점검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정부와 지자체는 11월 30일(월)부터 내년 1월 8일(금)까지 전국의 **사회복지시설 2,885개소**를 대상으로 **종합점검**을 실시한다.
  - 이를 위해 지난 11월 9일부터 11월 27일까지 사회복지시설 19,201개소에 대한 자체점검을 진행하여 안전점검표를 작성 하도록 하였다.
  - 11월 30일(월)부터는 각 지자체가 안전, 방역·보건의료 전문가 등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시설별 자체점검 결과를 확인하고, 이 중 **2,885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 특히 20년 이상 노후 시설, 50인 이상 거주 시설 및 하절기 안전점검 결과 재점검 필요 시설 등 63개소에 대해서는 보건 복지부와 지자체, 안전전문기관으로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하여, 시설 내 감염병 관리대책과 방역지침 준수 여부, 휴관 시 긴급돌봄 제공 계획 등을 중점적 으로 살필 예정이다.
- 한편, 전국 어린이집 4만여 개소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수립 하여 점검할 계획이다.
- 정부는 이번 방역·안전 종합점검 결과를 분석하여, **방역·안전과** 돌봄이 공존하는 사회복지시설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시설 방역 및 서비스 제공 지침을 보완할 계획이다.







# 8 │ 11월 손실보상금 지급

-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손실보상심의 위원회\* 심의·의결(11.25.)에 따라 총 1,287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11월 27일(금) 지급한다.
  -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 위원장, 이해관계자, 법률·손해사정·의학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 19 환자 치료의료** 기관의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 4월부터 **매월 잠정 손실에 대한 개산급\*을 지급**하고 있다.
  - \*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을 일부 지급하는 것
- 이번 8차 개산급은 **176개 의료기관**에 대하여 **총 1,034억 원**을 지급한다.
  - \* (보상항목) ①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10.31.), ②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10.31.), ③ 코로나19 환자 외 일반환자 감소 또는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7.31.), ④ 운영 종료된 감염병전담병원의 의료부대사업 손실과 회복기간 손실
  - \*\* (1~7차 누적 지급액) 343개소 대상 6,655억 원

### < 코로나19 손실보상 8차(11월) 개산급 지급(안) >

구분		치료의료기관						선별
	총계	소계 <sup>*</sup>	김염병 전담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	중증환자 입원치료	중증환자 전담치료	기타 치료의료	진료소
기관수(개소)	176	103	55	23	59	33	4	73
지급액(억 원)	1,034	953	609	355	571	423	39	80

- \* 각 유형별 중복 숫자 제외. 지급액은 유형별 전액 표시
- ※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은 모두 치료의료기관 및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포함











- 특히 이번 개산급부터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 대한** 손실보상\*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33개 의료기관에 254억 원을** 지급하는 등 **중증환자 병상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손실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 \* 코로나19 중증환자만 전담 치료하는 것으로 지정받은 병상으로 전담치료병상 1개 확보시 병상 5개 가치 보상, 중증환자 치료 시 병상 10개 가치 보상
- \*\* 33개 병원의 7,510병상(8.24~10,31 누적, 일평균 110병상, 가동률 60%)에 대해 254억 원 추가 보상
-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지난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 (보상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지자체가 폐쇄·업무정지 조치한 요양기관, 환자가 발생·경유하거나 그 사실이 공개된 요양기관,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및 사회복지 시설(제70조제1항제3호~제5호)
  - \* (보상항목) ① 소독비용, ②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③ (의료기관, 약국의 경우) 회복기간(3~7일),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
- 11월에는 의료기관 298개소, 약국 166개소, 일반영업장 2,167개소, 사회복지시설 10개소 등 2.641개소에 총 253억 워을 지급한다.
- 한편, 일반영업장 중 약 72%인 **1,566개소**에 대해서는 **간이절차\*를 통하여 각 10만 원을 지급**한다.
- \* 손실보상금이 정액(10만 원) 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영업장의 경우 매출증빙자료 등 별도 입증서류 제출 없이 정액(10만 원) 지급하는 것









### < 코로나19 손실보상 4차(11월) 손실보상금 지급(안) >

(단위: 개소, 백만원)

		의료기관			잍	사회			
구 분	합계	계	병원급 이상	의원급	약국	계	일반	간이	복지 시설
기관수	2,641	298	15	283	166	2,167	601	1,566	10
지급액	25,301	24,378	21,949	2,429	233	615	452	163	75

	그ㅂ	계	병원급이상				의원급			
구분		41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기관수	298	3	9	2	1	256	11	16	
	지급액	24,378	20,693	1,225	25	6	2,276	76	77	

- □ 정부가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해 확보한 예산**은 지난 10월 추가 확보한 예비비(2,014억 원)를 포함하여 **총 9,014억 원**이며, 11월까지 **8,001억 원을 집행**(집행률 89%)하게 된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연말까지 안정적인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내년에도 차질없는 보상을 위해 재정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 ※ 참고 - 코로나 19 손실보상 신청 문의

대상기관	문의처
코로나 19 환자 치료의료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손실보상지원단 (033-739-1791~5)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





평생친구

# 9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11월 26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6만 2409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3841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3만 8568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1,568명이 증가하였다.
  -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5개소 2,650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199명이 입소(45.2%)하여 격리 중이다.
- 어제(11.26.)는 1명이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계도조치하였다.
- □ 11월 26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내체육시설 1,744개소, ▲유홍시설 5,141개소 등 20개 분야 총 3만5752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164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 붙임 > 1. 단계별 방역조치 비교표
  - 2. 지역별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현황
  - 3. 감염병 보도준칙
- <별첨> 1.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 2.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 3.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 4.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 5.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 6.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 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 10.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 11.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 12.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평생친구

# 붙임1

# 단계별 방역조치 비교표

## □ 다중이용시설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중점관리시설	▲(공통) 마스크 착용, 출 <sup>6</sup>		-
유흥시설 5종	▲ 시설 면적 4m'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시설 면적 4m'당 1명으로	간 이동 금지 추가	▲ <u>집합금지</u> ▲ 시설 면적 8m²당 1명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인원 제한 ▲노래, 음식 제공 금지	▲ <u>21시 이후 운영 중단</u> <u>추가</u>	<u>인원 제한 강화</u> ▲ 노래·음식제공 금지
노래연습장	▲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하고 30분 후 사용	▲ 시설 면적 4m'당 1명 으로 인원 제한 추가 ▲ 음식 섭취 금지 추가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 시설 면적 4㎡당 1명 으로 인원 제한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시설 면적 4㎡당 1명 <u>으로</u>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추가	<ul> <li>▲ 21시 이후 운영 중단</li> <li>추가</li> <li>▲ 스탠딩금지, 좌석간</li> <li>1m 거리두기 추가</li> </ul>
식당·카페	▲ 150㎡ 이상의 시설은 ①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② 좌석 / 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 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 <u>수칙은 1단계와 동일,</u> 50㎡ 이상의 시설로 <u>의무화 대상 확대</u>	▲ (식당) 21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 추가 ▲ (식당) 50㎡ 이상의 시설 테이블 거리두기 ▲ (카페) <u>영업시간 전체</u> 포장·배달만 허용
일반관리시설			
실내체육시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추가	▲ <u>21시 이후 운영 중단</u> <u>추가</u>
결혼식장			▲ <u>100명 미만으로 인원</u>
장례식장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인원 제한 추가	<u>제한</u>
목욕장업	) (3건 전니, 천기·또축	▲ 음식 섭취 금지 추기 으로     ▲ 음식 섭취 금지 추기 의    □은 거리의 이불 50m' 이상의 시설로 의무화 대상 확대 의    □    □    □    □    □    □    □	▲ <u>시설 면적 8m<sup>2</sup>당 1명</u> <u>인원 제한 강화</u> ▲ 음식 섭취 금지 추가









# 평 생 친 구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영화관 공연장		▲ <u>다른 일행 간 띄워</u> <u>앉기 추가</u>	<ul> <li>▶ <u>좌석 한 칸 띄우기</u></li> <li><u>강화</u></li> <li>▶ <u>음식 섭취 금지(물</u></li> <li>무알콜 음료는 허용)</li> </ul>
PC방		▲ <mark>다른 일행 간 띄워</mark> <u>앉기 추가</u>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좌석 한 칸 띄우기
오락실· 멀티방 등		▲ <u>시설 면적 4m당 1명</u> <u>인원 제한 추가</u>	▶ 음식 섭취 금지(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학원· 직업훈련기관	▲마스크 착용, 출입자 <sup>-</sup> 명단 관리, 환기·소독	▲ <u>시설 면적 4m당 1명</u>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추가	▶ 음식 섭취 금지(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독서실· 스터디카페		▲ <u>다른 일행 간 띄워</u> <u>앉기 추가</u> ▲ <u>단체룸은 50%로 인원</u> 제한	▶ 조석         한         한         띄우기           강화(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놀이공원		▲ 수용인원의 절반으로 인	▲ <u>수용인원의</u> 1/3으로
워터파크		원 제한 추가	<u>인원 제한 강화</u>
이·미용업		▲ 시설 면적 4m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u>띄우기 추가</u>	▲ 시설 면적 8m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u>띄우기 강화</u>
상점·마트· 백화점	▲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추가 수칙 없음	







평 생 친 구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	국공립시설	▲경륜·경마 등 50% 인원 제한	▲ 경륜·경마 등 20% 인원 제한 ▲ 이외 시설 50% 인원 제한	▲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강화		
	사회복지시설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7.8	4 EL 제	4 = 51 31	ori ali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중점일반관시설 대중 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 시설, 집화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종교시설	▲ <u>실외 스포츠경기장</u> <u>추가</u>	▲ <u>실내 전체, 실외 집회·</u> 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모임·행사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 1단계 조치 유지하되 집화축제대규모 콘서트· 학술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 10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전시회, 박람회, 국제 회의에는 4m'당 1명 으로 인원이 제한
스포츠 관람	▲ 50% 이내로 관중 입장	▲ <u>30% 이내로 관중</u> 입장	▲ <u>10% 이내로 관중</u> 입장
등교	▲ 밀집도 2/3 원칙, 조정 가능	▲ <u>밀집도 2/3 준수</u>	▲ <u>밀집도</u> 1/3(고교는 2/3) 원칙, 조정 가능
종교활동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권고 (숙박행사 금지)	▲ 정규예배·미사·법회· 시일식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 ▲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부서별 적정비율 재택근무 실시 권고 (예: 1/5 수준) ▲콜센터·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 콜센터·유통물류센터 <u>환기·소독 의무화</u>	확대 권고(예: 1/3 수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 붙임2

#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현황(11.7.~)

(2020.11.26.(목) 17:00 기준)

<단계격상(21): 광역(7)+기초(14)> ※ 광역 \_\_\_\_

	지역		- 단계격상일/지	단계격하일/지역				
구분			년계국 6 <b>2</b> /^	·ɪ ㅋ 조치		년계국의 <b>2</b> /-	^i ㅋ 조치	İ
⊤正	권역	시도	기간/지역	단계	비고	날짜/지역	단계	中
1		서울	<u>11.24.~12.31.(서울)</u>	2		_	_	-
2	수도권	경기	<u>11.24.~12.7.(경기)</u>	2		-	-	-
3		인천1)	<u>11.24.~12.7.(인천)</u>	2		-	-	-
4		세종	-	-		-	-	-
5		대전	-	-		-	-	-
6	충청권	충북	11.25.~12.8.(음성)	1.5		-	-	-
7		충남	11.5~별도명령시(천안,아산) 11.24.~11.30.(논산)	1.5		-	-	-
8		광주	<u>11.19.~별도명령시</u>	1.5		_	-	-
9		전북	<u>11.23.~별도명령시</u>	1.5		-	-	-
10	호남권	전남	11.24.~12.7.(전남) 11.20.~별도명령시(순천) 11.27.~별도명령시(나주) 11.28.~별도명령시(군산)	<b>1.5</b> 2 2 2		-	-	-
11	경북권	대구	-	-		-	-	-
12	성독년	경북	-	-		-	-	-
13		부산2)	-	-		-	-	-
14		울산	-	-		-	-	-
15	경남권	경남	11.20.~12.3.(창원) 11.26.~12.9.(진주) 11.21.~12.4.(하동) <sup>3)</sup> 11.26.~12.9.(경남)	1.5 2 2 <b>1.5</b>		-	-	-
16	강원	강원	11.10.~별도명령시(원주) 11.19.~별도명령시(철원) 11.21.~12.4.(횡성) 11.24.~12.7.(춘천)	1.5		-	-	-
17	제주	제주	-	-		-	-	-

<sup>1)</sup> 인천: 11.23. 0시부터 1.5단계 → 24일 0시부터 2단계

<sup>3)</sup> 하동(11.19.), 진주(11.25.) 1.5단계 격상 후, 하동은 21일부터, 진주는 26일부터 2단계 격상











평생친구

# 붙임3

##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 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감염병 보도준칙

###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워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 기본 워칙

###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하다
-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추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sup>2)</sup> 부산: 11.27. 0시부터 2단계에 준하는 조치 실시





###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 권고 사항

-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평생친구

### ■ 별취

###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제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